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64
----------	-------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 의 자 : 김은희 · 김승수 · 우신구
정경희 · 박대수 · 아자스민
박덕흠 · 권명호 · 노용호
지성호 · 김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000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9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했지만 자립 수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이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에서”를 “제4호까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u>아동복지시설 등 시설</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 <u>제4호까지에서</u> ----- ----- ----- ----- ----- -----

<u><신 설></u>	<u>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